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동의안은 2009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시 동일세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토록 하고 세대 분가시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 유사 감면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감면하며
-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감면실적이 없고,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감면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제외 규정을 별도 주문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근거법령 조문 개정(안 제2조)
-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안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고, 실비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감면 배제(안 제7조)
- 농협중앙회의 구관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을 조정(안 제9조의2)
 - 감면을 75% 삭제(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50%감면만 해당)
- 고령화사회를 반영하여 1가구 1주택 예외대상 범위 조정(안 제12조)
 - 부양중인 고령 직계존속의 나이 상향조정(60세 이상→65세 이상)
- 실효성이 미미하고 감면실적이 없거나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 폐지(안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3조, 제21조)
 - 한국노동교육원 등 교육시설,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시 감면, 하수급업자의 대물변제 취득 감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주택,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 독립가옥집단화 사업 등으로 인한 취득부동산 감면
- 감면후 추진조건 일부 보완(안 제17조, 제27조, 제28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시 3년이상 사용 조건 → 2년이상 사용 등
-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시에 대한 감면제도 보완(안 제30조의4)
 - 동일세대거주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부모-자녀간 확인 등
- 사치성 재산을 감면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신설, 안 제31조의2)
 - 각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던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제외 규정을 별도의 1개 조문으로 통합하여 신설

4. 검토의견

가. 도세감면조례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

행정안전부에서는 개별법령의 개정사항, 중앙정부의 세제정책 변화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지방세법 제9조³⁾에 근거한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

▶ 도세감면조례 개정 추진과정

-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도 통보(2009. 9월 말)
-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수정안을 시도 통보(2009. 10월 중순)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도세 감면대상을 검토·확정하여 금번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나. 개정조례안 개정내용 검토결과

□ 과세형평을 위해 감면조정(제7조, 제8조)

○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노인복지시설 설치 → 설치하고 직접 운영자로 한정
- 현행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 → 무료노인복지시설으로 한정

○ 평생교육시설 등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 ※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은 감면

□ 지방세법 등에서 중복감면하거나,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이 없어 감면 목적이 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

3) 지방세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

(제9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3조, 제18조, 제21조)

-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자동차매매업,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의 매매용은 제외
 - ※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중고항공기는 감면
-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배달하기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하수급업자와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수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 할 경우 제외
- 임대주택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추진하는 임대주택은 제외
 - ※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감면
- 농어촌주택사업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취약지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지회 사업
 - 수복지역 및 접적지역의 재건축 건설사업
 - 분산농지집단지회사업
 -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 대책사업
 - 소도읍개발사업은 제외
- 광산지역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등 공동화장실은 제외
- 농협중앙회 등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구관사업용 재산에 대한 75%를 삭제
 - ※ 지방세법에 따라 50% 감면

□ **고령화 사회 특성을 반영한 감면** (제12조, 제30조의4)

- 1가구 1주택 판단시
 - 현행 감면대상인 부양 직계존속의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감면액 추징 배제

- 현행 감면추징대상인 1년이내 세대분가시 감면액을 추징하는 것을 동일세대 거주여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관계가 확인될 시 감면

□ 감면후 추징조건 일부 보완 (제17조, 제27조, 제28조)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조정》

- 현행 감면대상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가공업자5년이내에서 2년이상으로 조정
- 현행 감면대상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시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조정
- 현행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3년이내에서 1년내로 조정

□ 사치성 부동산 감면조항 신설하여 감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

(제5조의2, 제19조, 제22조, s제23조, 제30조의2, 제31조의2)

-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및 공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 관계법령과 관련 용어 정비

-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변경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대한 근거법령과 자구수정을 위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활용사촌으로 변경

다. 종합의견

금번 개정안은 도세 감면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시키는 한편,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도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회복지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과,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감면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붙 임 : 1. 도세감면조례 조문별 개정내용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도세감면조례 조문별 개정내용

조 문	현 행	개 정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제4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5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사치성재산은 감면제외임을 의미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등)	해당 내용 삭제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감면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시 감면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취·등록세 면제	무료 노인복지시설만 취·등록세 면제

조 문	현 행	개 정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한국노동연수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도 감면 대상	해당 조문 삭제
제9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의 구관사업용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 75% 감면	75% 감면 조문 삭제 (단, 삭제 후에도 지방세법 266조제 3항에 따라 50% 감면 가능)
제11조 (매매용 및 수출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차 취득시 취득세 면제, 등록세 1%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 취득시 취득세 면제	해당 감면내용 삭제
제11조의2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화물운송사업자가 택배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조변경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해당 조문 삭제
제12조 (주택에 대한 감면)	전용면적 40㎡이하 1억원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인 된 경우는 취득등록세 면제 단,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는 1가구1주택 감면조건에서 제외	부양하는 고령의 직계존속의 나이를 60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제12조의2 (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	하도급대금으로 주택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	해당 조문 삭제

조 문	현 행	개 정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및 분양받을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주택에 대한 감면 삭제
제14조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15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감면)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7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면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조건 -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1년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5년이내 해당사업이외에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추정 - 입주업체는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개시전 양도할 경우 추정 	취득하는 부동산을 1년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추정

조 문	현 행	개 정
제17조의2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련 법률」 제2조제6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18조 (농어촌주택 사업에 대한 감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아래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면제 - 취약지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 옥집단화사업 - 수복지역 및 접적지역의 재건축 건설사업 - 분산농지집단화사업 -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 - 소도읍개발사업으로 1년이내 대 체취득	해당 조문 삭제
제19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 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사치성재산은 감면제외임을 의미	해당 내용 삭제
제21조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등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 면제	해당 조문 삭제

조 문	현 행	개 정
제22조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 외한다. ※ 사치성재산은 감면제외임을 의미	해당 내용 삭제
제23조 (신용보증재단 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 외한다. ※ 사치성재산은 감면제외임을 의미	해당 내용 삭제
제2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 체입주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 단, 3년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 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추징	사용일부터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추징
제28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 한 감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 구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 등록세 면제 단, 3년내 당해 사업에 직접사 용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추징	취득하는 부동산을 1년내 사용하 지 않거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추징
제30조의2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 외한다. ※ 사치성재산은 감면제외임을 의미	해당 내용 삭제
제30조의4 (출산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 록표에 기재된 18세 미만의 직계 비속을 셋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배우자의 자녀) 를 양육하는 자
	1년내 세대분가시 추징	추징조건 삭제
제31조의2 (감면제외 대상)	신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 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